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2. 8. 25.(수) 14:3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32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2년도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34차부터 제39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신규 허가에 관한 건 (2022-40-145)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신규 허가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신규 허가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로 허가하되 허가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별지]와 같이 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 경과입니다. 지난 5월 17일 OBS경인TV(주)를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허가 대상 선정법인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4> 라디오방송 허가 사항입니다. 방송사항은 방송사항 전반 및 광고 방송이며, 방송구역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 검토 결과입니다. 투자자본금은 총 100억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사내 유보금 20억원 투자계획과 총 80억원의 유상증자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 은행계좌 개설 및 잔고증명서를 확인하였고, 신규 주주의 주식 납입금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재를 확인하였습니다. <나> 방송 개시 계획입니다. 허가증 교부 후 라디오 본부 신설·장비 발주 등을 거쳐 '23년 2월 중으로 FM방송국을 개국할 예정입니다. OBS경인TV(주)는 (구)경기 방송 인력을 '22년 6월에 5명을 채용했고, 9월에 9명을 채용하여 기존 인력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계획입니다. 허가증 교부 후 3개월 이내에 5억원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라> 허가 조건입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신규 방송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자본금의 별도 관리·주주변동 제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신규 투자자본금은 기존 DTV 방송과 분리해 라디오 방송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신규주주의 주식은 3년간 처분금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서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출연금 납부 계획을 조건으로 검토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얻을 것과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출연금을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재난방송 매뉴얼·편성 규약·혼신 해결 등 지상파 방송국으로서 준수하여야 사항을 허가 조건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 권고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취자 권익보호와 수신환경 개선

등과 관련하여 권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청취자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 후 시행할 것과 수신환경을 점검하고, 난청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바> 허가 유효기간입니다. 신규 방송 허가인 점을 고려하여 개국일로부터 3년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되면 8월 말까지 허가증 교부를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허가기간이 3년인데 참고표시를 보시면 'OBS경인TV(주)가 기허가 받은 OBS경인DTV방송국 과의 허가유효기간의 일치'를 위해 단축을 요청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 입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지금 OBS경인TV의 경우에는 올해 재허가가 만료됩니다. 올해 재허가를 받았을 때 OBS경인 TV가 3년, 4년, 5년의 허가를 받는 경우와 OBS경인FM이 내년에 허가를 받아서 그로부터 3년이 되면 텔레비전방송국과 허가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통상적으로 사업자의 행정 편의성을 위해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허가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3년을 당긴다는 의미입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3년에서 안쪽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3년 이내로?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예를 들면 2년 6개월 정도 다음번 OBS경인TV와 이것이 맞물리면 그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과거에도 다른 방송사들 TV와 라디오 등 또 KBS와 같은 경우 여러 채널이 있을 때 합쳐서 이렇게 단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시지요?

- 김효재 상임위원
 - 예, 원안 동의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보통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를 여러 번 쓰느니 단축해서라도 한꺼번에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2020년 3월 지상파 라디오가 폐업한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경기도민을 위한 라디오 방송 OBS 경인FM방송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OBS경인TV(주)는 (구)경기방송 직원 전원의 고용승계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2022년 6월에 5명을 채용하고, 2022년 9월에 9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경기방송 종사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경기방송 복원을 위한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고 경기도민에게 사랑받는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오랜 기간 경기도민과 옛 경기방송 종사자들의 숙원인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를 허가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전 내용처럼 사내유보금과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자본금이 마련되었고 방송개시 계획과 기금 납부 계획 등을 고려해서 경기지역 라디오방송

사업자로 OBS경인FM 방송을 신규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정적 사업 운영과 사업계획서 이행을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한 허가조건과 권고사항 역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많은 어려움 끝에 새로 출범하는 OBS경인FM방송이 경기지역의 여론 다양성을 높이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경기방송은 방송사가 스스로 폐업을 결정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오늘로서 879일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허가를 받게 되는 만큼 OBS경인TV(주)는 라디오 99.9MHz가 다시 경기 지역 청취자들에게 돌아가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내년 2월에 개국될 수 있도록 OBS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사무처에서도 개국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OBS경인TV(주)가 안팎의 여러 가지 문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허가 조건과 이 조건의 이행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FM방송국의 허가가 OBS경인TV 역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경남기업(주)의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2-40-146)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경남기업(주)의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석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은 ‘경남기업(주)에 대해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와이티엔디엠비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않도록 등 방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경남기업(주)에 대해 「방송법」 제8조제1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경과사항입니다. 2005년 5월 경남기업(주)은 (주)와이티엔디엠비 주식을 취득하였고, 2017년 12월 SM 기업집단은 경남기업(주)을 인수하였습니다. 2021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남기업(주)이 소속된 SM 기업집단을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함에 따라 2022년 7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경남기업(주)에 의결권 제한을 통보하고, 같은 해 7월 14일 시정명령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다음 3쪽 <4> 주요내용입니다. <가> 피심인 위반현황입니다. 경남기업(주)은 SM 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주)와이티엔디엠비의 주식 약 17.2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남기업(주)의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방송법」 관련 규정입니다. 「방송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대기업 및 그 계열회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는 같은 법 제8조제12항에 따라 그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 제8조제1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 위반사항입니다. 피심인이 소속된 SM 기업집단이 2021년 5월 1일 대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심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나,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주)와이티엔디엠비의 주식 약 17.26%를 소유하여 「방송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나> 피심인 의견입니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와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며,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DMB 시장이 매년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최대 주주의 추가 주식 매입 여부가 불투명하고 기존 주주 등의 매입 의사가 없어 단기간 내 주식 처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의 유예 또는 재고를 요청하였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피심인의 「방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제한 위반이 2021년 5월 1일 발생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시정 명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피심인은 단기간 내 위반사항 해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시정명령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8조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6>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경남 기업(주)에 시정명령 처분 통지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이 작년 5월 1일 SM 기업집단이 경남기업(주)을 인수합병하면서 그때 그 즉시 발생한 일이지요?

○ **이동석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위반사항은 당시에 발생한 것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런데 1년 동안 모르고 있었습니까?

○ **이동석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우리도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 **이동석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경남기업(주)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 이동석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피심인의 의견에 따르면 저희가 의결권 제한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위반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이 1년이나 행정행위가 지연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 이동석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일단 주주 변경 관련해서 최대액출자자 변경신고 이외 기타주주 변경에 대한 신고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조치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1년씩이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약간 의아해서 묻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 이것은 시정명령이 필요하고, 다만 DMB 방송이 거의 페이드아웃(fade-out)하고 있는 상황에서 SM 그룹도 아주 골치가 아프겠군요.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이번 안건을 보더라도 지상파 방송사의 소유·경영 규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행정처분 건과 관련해서 피심인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행법령상 소유 제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시정명령은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 동의 의견이셨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경위를 좀 더 보충드리면 이것이 최초 경남기업(주)이 최대주주는

아니고 2대 주주로 들어왔는데 아시다시피 SM이 2017년 12월에 경남기업(주)을 인수하면서 결국은 2대 주주지만 손자회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스템상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보통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최대주주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2대 주주 이하 소액 주주들은 지역민방도 외국인 지분 등 이런 경우가 가끔씩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허가 때 확인해서 제재하거나 그리고 다시 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대기업은 손자회사이고 최근 상황이다 보니까 놓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재허가·재승인 때 외에도 5월 1일이 되면 개인주주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제히 모든 주주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갖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5월 1일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전제사실들이 발생했고, 그러면 그 인근에 행정처분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경남기업(주)이 상호출자 제한기업에 속한 것인지에 대해 파악이 안 됐다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말한 대로 5월 1일이 되어서 대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발표가 있으면 바로 현황을 파악해 보든지, 아니면 방송사업자들의 경우 주주의 내역변동이 있으면 수시로 받아보는 방법을 채택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취해야 할 행정처분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은 마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필교 코로나19지난방송대응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수어 재난방송 확대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금년 5월 국정과제에 수어 재난방송 확대 등을 통한 재난방송 접근권 강화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정부입법계획을 수정 제출하였고, 7월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수어 재난방송 제공사업자 규정입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재난 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지상파텔레비전방송 및 종편·보도 PP는 재난방송 시 한국수어 통역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어 재난 방송에 필요한 경비 지원근거 규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및 검토결과입니다. TV조선, MBN, YTN에서 법적 의무화에 대한 부담과 제작비용 전부 지원 관련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종편·보도PP는

수어 재난방송이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입니다. 그리고 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12월에 국회 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우리 위원회가 장애인의 활발한 미디어 활용을 위한 정책들을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재난 시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얼마 전 폭우 사태에서도 확인됐듯이 재난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특히 더욱 가혹한 피해를 입히는데 재난방송 시 수어방송 의무를 부과 또는 권고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재난에 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일상화·국지화되어 가는 다양한 재난에 대응하여 지역방송사가 지자체 소유의 CCTV를 활용하여 생생한 지역밀착형 재난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사와 지자체 간 MOU 체결 등을 적극 지원하기 바라며,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이번 개정 건은 재난방송 접근권과 장애인 미디어 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적이고 공익적 서비스인 만큼 해당 방송사들의 수어 재난 방송 시행에 적극적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되었습니다.

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및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및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및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2021년도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와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올 3월 말까지 미디어렐사 6개사로부터 영업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6월 17일까지 영업보고서를 검증하였고, 5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는 6개사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위원회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난 7월 28일 영업보고서 검증결과를 심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도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입니다. 결합판매 지원입니다. 코바코의 2021년 방송광고 매출액 7,280억원 중 결합판매 매출액은 861억 7,600만원으로 2021년 결합판매 지원고시에서 정한 결합판매 지원 평균 비율에 미달하는 11.8369%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 라디오 방송사의 경우 사업자별 최소지원 규모에서 23억 5,900만원이 미달되게 판매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6개 라디오 방송사는 (재)CPBS, (재)극동방송, (재)불교방송, (재)원음방송, (주)경인방송, (주)YTN라디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21년 미이행분을 올 3월까지 이행한 사실을 확인한 바,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에 따른 지원은 최종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SBS M&C는 '21년 방송광고 매출액 4,720억 7,500만원 중 결합판매 매출액은 432억원으로, 결합판매 지원 평균 비율을 초과하는 9.1530%를 판매하여 고시에서 정한 지원규모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코바코와 SBS M&C의 결합판매 매출액을 합해 보면 1,293억 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판매액 중에서 2020년도 결합판매가 부족해서 이월됐던 7억 6,000만원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총 1,293억 8,500만원을 결합판매로 해서 그 전년에 비해서는 18.47%가 금액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결과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탁수수료 및 대행수수료 지급입니다. 미디어렐 6개사 모두 미디어렐법에서 정한 방송광고 수탁수수료 및 광고대행사에 지급한 대행수수료 지급기준을 준수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중소 방송사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MBC는 최근 5년간 MBC 본사 광고매출 대비 지역MBC 광고매출 비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역 MBC에 91.2%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서 전년 대비 96.4%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SBS와 지역민방은 SBS 네트워크 광고 합의서에서 정한 최근 5년간 SBS 네트워크 매출 대비 지역민방 광고매출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지역민방에 97.1%에 해당하는 총 993억원을 지원하여 광고합의서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SBS와 OBS를 볼 때는 전체 지역민방 지원 비율과 동등한 수준으로 OBS를 지원하여 SBS M&C의 재허가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계분리기준 준수 여부입니다. 미디어렐 6개사 모두 회계분리 기준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서에 따라 회계분리를 적절히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소유제한 준수 여부입니다.

2021년도 방송광고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SBS M&C와 JTBC미디어컴·MBN미디어랩의 주주 3개사가 방송광고대행자의 특수관계자로 파악되어, 미디어랩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한 주주인 (주)SBS,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주)매일방송 이렇게 3개사에 대해서는 미디어랩 제13조제6항에 따라 시정 명령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상파 미디어랩별 결합판매 평균 비율입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른 '22년도 결합판매 평균 비율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2.1326%, (주)에스비에스 M&C 9.1327%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입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제2호에 따른 해당 연도 광고판매대행자별로 지원하여야 하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각 사별 결합판매 지원규모는 미디어랩 대행 지상파방송들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지상파방송광고 총 매출액 중 지원대상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결합판매된 평균 비율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 6>과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규제 재검토 조항 분리입니다. 법제처의 일몰기한 정비 협조 요청 등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규제의 재검토 및 재검토기한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소유제한 위반 주주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그리고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행정처분 예고 및 사전 규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중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먼저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회계분리, 지역 중소방송사 지원 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소유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주식 매각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작년에 전체 방송광고매출이 증가하여 결합판매 광고도 직전 연도 대비 19.2%가 증가했습니다. 지역 중소방송사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다시 어려워지다 보니 최근 방송광고매출이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악화되고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엇그제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낡은 규제 개선, 미디어 법제 마련 등을 통한 미디어 성장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과제로 발표했습니다. 아마 낡은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방송사 성장과 직결된 분야가 광고시장일 것입니다. 사무처의 광고제도 개선 등 규제 혁신을 당부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코바코와 SBS M&C에 대한 2021년도 영업보고서 회계검증 결과 일부 소유제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지만 결합판매 및 지역 중소방송사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은 비교적 잘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2022년도 결합판매 평균비율은 작년에 비해 소폭 줄었는데 다행히 지상파 방송사들이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 광고매출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일부 광고주의 결합판매 기피 등으로 결합판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이에 대한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성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지금 이야기가 나왔지만 방송시장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저희가 작년에 연구반을 구성해서 1차 사업자 간 의견을 수렴했고, 올해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을 통해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안들을 시뮬레이션 해 보고 그런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안형환 부위원장

- 용역이 언제쯤 끝납니까?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올해 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 안형환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아무튼 논의의 속도를 높여서 하루빨리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되었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2년도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02분 폐회 】